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650
----------	-----

2019년 6월 17일
보건복지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5월 21일 이정인 의원
2. 회부일자 : 2019년 5월 24일
3. 상정일자 : 제287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
【2019년 6월 17일 상정·의결】

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정인 의원)

1. 제안이유

-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“정신장애”를 들고 있는바, 단순히 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‘정신장애’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5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Ⅲ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정창훈)

1 개정안의 취지 및 현황

- 본 개정안은 제5조제1호에 규정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인 “정신장애”는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함으로써 “장기간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하는 것임.

2 주요사항 검토

가. 위원회 위원 해촉 사유 변경(안 제5조)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원의 해촉) 서울특별시 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위 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 1.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	제5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----- -----

- 현재 시행되고 있는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의 제5조 위원의 해촉 사유로 “정신장애” 들고 있으나 정신장애의 정도를 언급함 없이 단순히 ‘정신장애’만을 근거로 위원의 해촉 사

유로 드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 제5조제1호의 위원의 해촉 사유인 “정신장애”는 정신장애의 정도를 언급함 없이 단순히 ‘정신장애’만을 근거로 위원의 해촉 사유로 드는 것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□ 위원회 개요

○ 설치근거 :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40조, 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※ 「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」 제정 및 위원회 구성 : 1993. 5.11

○ 기능 및 역할

- 사회복지에 관한 정책방향·시행계획 등 중요사항 연구·조정
-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심의·자문
-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및 사회보장추진과 관련한 중요사항 심의·자문
-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

○ 소요예산 : 18,000천원 (시비 100%)

제13대 사회보장위원회 현황

◆ 위원수 : 총28명 【위촉직 26, 당연직 2】

※ 여성비율 : 46%(남 15, 여 13) / 당연직 : 복지본부장, 여성정책가족실장

◆ 임 기 : '18.10.26 ~ '20.10.25(위촉일로부터 2년간)

□ 추진실적

○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개최 : 1회('19. 2.20)

- '19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4기 사회보장기본계획 심의

○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소위원회 개최 : 1회('19. 3.15)

-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

IV. 질의 및 답변요지 : 「생략」

V. 토론요지 : 「없음」

VI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【재적위원 11명, 참석위원 11명, 참석위원 찬성 9명, 반대 0명】

VII. 소수의견 요지 : 「없음」

VIII. 기타 필요한 사항 : 「없음」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이정인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5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5월 21일
발 의 자 : 이정인, 채유미, 장상기,
김태호, 김인호, 이은주,
이승미, 홍성룡, 노승재,
김소영, 강동길, 김소양,
이병도, 박순규, 이영실,
김제리, 김혜련, 봉양순,
정진술, 오현정 의원 (20명)

1. 제안이유

-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“정신장애”를 들고 있는바, 단순히 정신적 장애를 해촉 사유로 규정하여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, 이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‘정신장애’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용어를 변경함(안 제5조제1호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 참조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호 중 “정신장애로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위원의 해촉) 서울특별시 장(이하 “시장” 이라 한다)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 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<u>정신장애로</u>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제5조(위원의 해촉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</u>----- 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